

검토의견서

발령안명	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(일부개정)				
소관부처	소방청	접수일	2024. 1. .	검토 완료일	2024. 1. .
발령안의 주요내용					
○ 인증대상 소방장비(9종)를 추가함(안 별표 1) * 관계 법령: [별첨] 참고					
법리 검토 사항					
법령위반 · 위임범위 일탈여부	<결론> ○ 법령위반 또는 위임범위 일탈의 문제는 없음. <이유> ○ 「소방장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<u>소방청장</u>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<u>소방장비</u>에 대하여 <u>인증</u>을 할 수 있고,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함)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”란 <u>다음 각 호*</u>의 소방장비를 말하며,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함)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<u>소방장비의 범위</u>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<u>고시</u>하는 바에 따름. * 1. 소방펌프차 2. 소방고가차(消防高架車) 3. 방화복 4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○ 이 건 고시안 「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」 별표 1은 <u>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</u>에 안전모류, 안전화류를 추가하여 구분하고, <u>인증대상 소방장비</u>에 소형사다리차, 특수구급차, 방화두건, 방화장갑,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				

	소화장치, 사이렌, 안전헬멧, 방화헬멧, 방화신발을 <u>추가</u>하려는 것인데, - 이는 법 제12조제1항, 영 제9조 및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소방장비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<u>법령위반이나 위임범위 이탈의 문제는 없음.</u> ※ 권고 사항 ○ 부칙 1. 제3조 -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였으나, 본칙 제1조(목적)에 해당 규칙의 위임 조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. 2. 별표 1 - 별표 1의 제목은 ‘인증대상 소방장비’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‘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 및 인증대상 소방장비’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 -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1. 소방펌프차, 2. 소방고가차, 방화복이 포함되어 있으나, 영 제9조에서 이미 해당 내용을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이 고시에서는 제4호의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별표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.
중복·상충 여부	○ 다른 훈령·예규 등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 없음.

「소방장비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소방장비**”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·화재진압장비·구조장비·구급장비·보호장비·정보통신장비·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.
2. “소방업무”란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.
3. “소방기관”이란 중앙소방학교·중앙119구조본부·소방본부·소방서·지방소방학교·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·항공구조구급대·소방정대·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관리”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(不用)의 결정과 폐기·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·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.
5. “운용”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6. “내용연수”(耐用年數)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.
7. “소방장비운용자”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.

제12조(소방장비의 인증) ① **소방청장**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**(이하 “인증대상 소방장비”라 한다)에 대하여 **인증**을 할 수 있다.

-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·절차·방법·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인증기관의 지정 등)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.
-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·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 3.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4. 실수·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
5.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
6.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7.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⑦ 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·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

제9조(인증대상 소방장비)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”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. <개정 2020. 12. 15.>

1. 소방펌프차
2. 소방고가차(消防高架車)
3. 방화복
4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

제10조(소방장비 인증의 기준)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(이하 “인증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 <개정 2021. 1. 5., 2023. 5. 15.>

1. 제품심사기준: 소방장비의 구조·기능·성질·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본규격에 따른 기준
2. 현장심사기준: 소방장비의 제조시설·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

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

제11조(인증기관의 지정 신청)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소방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,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7.>

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
2.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. 이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3.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4.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
-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,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.
-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-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

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소방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,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.